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1
----------	-----

2019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17일, 이광성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에너지정책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 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에너지정책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그 동안 상징성만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18명¹⁾)와 조례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 규정 없이 구성·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51명)를 ‘에너지정책위원회(50명 이내)’로 통합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19.3.28)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조례 개정 이전에 구성·운영되었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위원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정책 자문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역할에 맞게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다른 조례²⁾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준용할 필요성도 있음.

1) 기존 조례 규정상 30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따라서 안 제12조제2항과 같이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본부장과 관련 실·본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은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뤄, 위원회와 시의회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련 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는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위원장은 3명³⁾(시장, 위촉위원 중 2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2명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장 수를 2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 연임 횟수 및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3) '12년 조례 개정시 위원장을 2명으로 규정할 의도였지만, 문맥상 오류를 범하여 실제 3명으로 규정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정책 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2명으로 한다”를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제3항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에너지정책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u></p> <p><u><신설></u></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u></p> <p>④ ~ ⑤ (생략)</p>	<p>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 ----- ----- <u>에너지정책위원회</u>-----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u>위원장</u>----- ----- <u>사람 1명으로</u> <u>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u> <u>된다.</u></p> <p>1. <u>당연직 위원 : 기후환경본부장,</u> <u>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u></p> <p>2. <u>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u> <u>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u> <u>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u> <u>위촉하는 사람</u></p> <p>③ <u>위촉위원</u>----- <u>두 차례만 연임</u>----- . <u>다만, 보궐</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u> <u>한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_____

-- 범위-----.